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69회 정례회
'18. 11. 23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경천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, 각 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·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용어 정비

- 통합기금관리관 → 통합기금운용관
- 통합기금운용관 → 분임통합기금운용관

나. 용어 및 문구 정비 (안 제11조의2, 12, 13조)

- 해촉 → 위촉 해제, 회무 → 위원회의 사무, 잔임기간 → 남은 임기

다.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

- (기존) 2018.12.31.까지 → (연장) 2023.12.31.까지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용어를 정비하고,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6조는 기존 통합관리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임.
 - (현행) 통합기금관리관 → (개정) 통합기금운용관
 - (현행) 통합기금운용관 → (개정) 분임통합기금운용관

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4조(기금의 지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- 안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함.
 - (현행) 해촉 → (개정) 위촉 해제
 - (현행) 회무 → (개정) 위원회의 사무
 - (현행) 잔임기간 → (개정) 남은 임기
- 안 제18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 것으로,
 -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의 “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“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,

-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(8.14.)을 거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타당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,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개정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해당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